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92 발의연월일: 2024. 7. 12.

발 의 자: 박성민·김위상·이헌승

서일준 • 박덕흠 • 김상욱

박수민 • 김성원 • 구자근

김 건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하며,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2조).

- 나.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, 금고가 보유하는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,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·추심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3조의3부터 제76조의6까지).
- 다.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0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정부,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

제72조의3제1항제3호 중 "제38조제2항"을 "제38조제2항 또는 제80조의 2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제80조의2"를 "제80조의3"으로 한다. 제3장에 제10절(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)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

제73조의3(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) ① 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"금고등"이라 한다)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,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 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(이하 "부실자산"이라 한다)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(이하 "관리회사"라 한다)를 설립할 수

있다.

- 1. 금고
- 2. 중앙회
- 3. 금고가 출자한 회사
- 4.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
- 5.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
- 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.
-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「상법」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3조의4(업무)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금고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
- 2.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·추심(가압류, 가처분,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 및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
- 3.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.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
 - 나.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·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· 대여·개발 처분
 - 다.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)의 인수

- 4. 금고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・추심 수임(受任)
- 5. 금고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
- 6. 합병,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금고와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금고등의 자산의 관리·매각 및 매매의 중개
- 7. 금고등이 위탁한 업무용・비업무용 자산의 공매(公賣)
-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
- 9. 금고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- 10.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
- 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
- 12.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
- 제73조의5(자금의 조달 및 운용)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.
 - 1.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
 - 2.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
 -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
 -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 - 1. 부실자산의 매입
 - 2. 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·제7호·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

- 3.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
-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- 1.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
- 2. 국채·공채의 매입과 정부,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

제73조의6(다른 법률의 준용)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제44조, 제45조,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사"는 "관리회사"로, 같은 법 제45조 중 "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"을 "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"을

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금고와 중앙회"를 "금고, 중앙회 및 관리회사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중앙회"를 "중앙회 및 관리회사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·제4항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중 "금고 또는 중앙회"를 각각 "금고,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"로 한다.

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·단서, 같은 조 제2항·제3항, 같은 조 제4항 본문·단서 중 "금고 또는 중앙회"를 각각 "금고, 중앙 회 또는 관리회사"로 한다. 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금고 또는 중앙회"를 각각 "금고,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80조의2제7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5까지를 각각 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6까지로 하고,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80조의3(종전의 제80조의 2)제1항 중 "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(이하 "부실금고"라 한다)에"를 "부실금고에"로, "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(이하 "계약이전"이라 한다)"을 "계약이전"으로 하고, 제80조의4(종전의 제80조의3)제1항·제2항·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"제80조의2제1항"을 각각 "제80조의3제1항"으로 하며, 제80조의5(종전의 제80조의4)제1항 중 "제80조의2제6항"을 "제80조의3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"제80조의2제7항"을 "제80조의3제7항"으로 하며, 제80조의6(종전의 제80조의5)제1항 중 "제80조의2제1항"을 "제80조의3제

제80조의2(적기시정조치)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.

1.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

- 2.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
- 3.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금고
- ② 주무부장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향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부실금고나 제2항의 부실우려금고(이하 "부실금고등"이라 한다) 및 부실금고등의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·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
- 1. 금고에 대한 주의·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·경고·견책 또 는 감봉
- 2. 출자금의 감액, 자기자본의 증대,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사무소· 조직의 축소
- 3.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 (受信)의 제한
- 4.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(選任)
- 5.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(이하 "업무정지"라 한다)
- 6. 합병

- 7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(이하 "사업양도"라 한다)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(이하 "계약이전"이라 한다)
- 8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고의 재무건 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
- ④ 주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(이하 "적기시정조치"라 한다)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금고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크게 미치 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 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1. 업무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
- 2.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
- 3.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
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
-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금고가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.
-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금고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.

- ⑦ 주무부장관은 부실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,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업무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- 1.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제3항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회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

제83조 본문 중 "제79조의5제1항제1호"를 "제79조의5제1항제1호, 제80조의2"로 한다.

제85조제5항 중 "제2조제5항을 위반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2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- 2.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, 관리인 또는 청산인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행 개 정 아 혀 제72조(준비금의 조성 등) ①준 제72조(준비금의 조성 등) ① --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 로 조성한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정부, 「한국은행법」에 따 4.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으로부터의 차입금 5. (생략)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72조의3(준비금의 용도 등) ① | 제72조의3(준비금의 용도 등)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 용하여야 한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제38조제2항에 따른 금고 3. 제38조제2항 또는 제80조의 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대 출 또는 지워 4. 제80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 4. 제80조의3-----을 위한 자금지원 5. (생략) 5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<신 설> 제73조의3(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 사의 설립) ① 금고 및 중앙회

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(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"금고등"이라 한다)의 부실예 방 및 경영개선, 금고등이 보 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 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 용 자산(이하 "부실자산"이라 한다)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 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 산관리회사(이하 "관리회사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- 1. 금고
- <u>2</u>. 중앙회
- 3. 금고가 출자한 회사
- 4.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
- 5.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
- 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.
-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「상 법」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.
- 제73조의4(업무)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금고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

<신 설>

매각

- 2.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· 추심(가압류, 가처분, 「민사 집행법」에 따른 경매 및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 및 채무관 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
- 3.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
 - <u>가.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</u> <u>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</u> <u>취득</u>
 - 나.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

 보전・증대하기 위한 부

 동산의 매입・대여・개발

 처분
 - 다.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 전환에 따른 지분증권 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 증권을 말한다)의 인수
- 4. 금고등의 부실자산의 보전· 추심 수임(受任)

- 5. 금고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·채권추심수임
- 6. 합병,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 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금고와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금고등의 자산의 관리·매각 및 매매의 중개
- 7. 금고등이 위탁한 업무용· 비업무용 자산의 공매(公賣)
-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
- 9. 금고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- 10.
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

 따른 출자 및 투자
- 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
- 12.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 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 하는 업무
- 제73조의5(자금의 조달 및 운용)
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

<신 설>

다.

- 1.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금
- 2.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 금
-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 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
-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가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- 1. 부실자산의 매입
- 2. 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
 ·제7호·제8호 및 제10호의
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
 자금
- 3.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
-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수 있다.
- 1.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
- 2. 국채·공채의 매입과 정부,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 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

<신 설>

제74조(감독 등) ① 주무부장관, 전투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은 금고와 중앙회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. 다만,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.

| 제73조의6(다른 법률의 준용) 관 |
|---------------------|
| 리회사에 관하여는 「한국자 |
| 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|
| 법률」 제23조, 제44조, 제45 |
| 조,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|
|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사"는 |
| "관리회사"로, 같은 법 제45조 |
| 중"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 |
| 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 |
| 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|
|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|
|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 |
| 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 |
| 이 되려는 경우에는"을 "「민 |
| 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절차 |
| 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 |
| 우에는"으로 본다. |
| 제74조(감독 등) ① |
| |
| |
| 금고, 중앙회 및 관리회 |
| 사 |
| |
| |

- 1. (생략)
- 중앙회에 대한 감독: 주무 부장관
- ② 주무부장관, 특별자치시장 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 따 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 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 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 거나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 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 청장의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서 제출 명령은 금고에 한정 한다.
-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급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하게 할 수 있고,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을 위하

| 1. (현행과 같음) |
|--|
| 2. 중앙회 및 관리회사 |
| |
| |
| 2 |
| |
| |
| |
| |
| 금고, 중앙회 또 |
| 는 관리회사 |
| |
| |
| |
| |
| |
| , |
| |
| |
| |
| |
| |
| ② |
| 3) |
| |
| |
| 금고, 중앙회 또는 관리회 |
| |
| <u>\lambda\</u> |
| |
| |
| |
| |
| |

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 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 게 할 수 있다.

- ④ 주무부장관은 <u>금고 또는</u> <u>중앙회</u>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.
- ⑤ 주무부장관, 특별자치시장 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・군수・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 회에 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 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글 고 또는 중앙회에 대한 감독 · 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 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 항을 정하여 고시하며, 특별자 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

| ④ |
|------------------|
| 회 또는 관리회사 |
| |
| |
| <u></u> . |
| <u> </u> |
| |
| 금고, 중앙회 또 |
| <u>는</u> 관리회사 |
| |
| |
|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|
| 6 |
| <u></u> - |
| 고,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|
| |
| |
| |
| |
| |

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감독·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⑦ (생략)

제74조의2(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)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고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를 요구할수 있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 요구만 할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② 제1항(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임직

| ⑦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-----------|
| 제74조의2(임직원에 대한 제재처 |
| 분) ① |
| <u>앙회 또는 관리회사</u> |
| |
| |
| |
| 금고, 중앙회 또는 |
| |
| <u> 관리회사</u> |
| |
| |
| |
| <u>금고, 중앙회 또</u> |
| <u>는 관리회사</u> |
| |
| 1.•2. (현행과 같음) |
| ② |
| |
| 그ㄱ 주아히 ㄸ느 교리치지 |
| 금고,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|

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 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.

- ③ 주무부장관은 <u>금고 또는</u> <u>중앙회</u>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는 지체 없이 이를 등 기하여야 한다. 다만, 금고 또 는 중앙회가 그 등기를 게을 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금 고 또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 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74조의3(금고 등에 대한 행정 처분) ① 주무부장관은 <u>금고</u>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금고</u>

| ③ |
|--------------------|
| 회 또는 관리회사 |
| |
| |
| 4 |
| |
| 앙회 또는 관리회사 |
| |
| 금고,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|
| 금고, 중앙회 |
| <u> </u> |
| <u> </u> |
| |
| ⑤ (현행과 같음) |
| 에74조의3(금고 등에 대한 행정 |
| 처분) ① <u>금고,</u> |
|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|
| 0 0 러 ㅗㄴ 단니커^// |
| : |
| |
| |

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~ 7. (생 략) <신 설>

③ ~ ⑥ (생 략) <신 설>

| 금고, 중앙회 또는 관리 |
|--------------------|
| 회사 |
| |
| |
| 1 0 (취레기 기수) |
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② |
| |
| |
| |
| |
| |
| · |
| 1. ~ 7. (현행과 같음) |
| 8. 제80조의2제7항 각 호 중 |
|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|
| <u>기</u> |
| |
| 제80조의2(적기시정조치) ① 주 |
| 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|
|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|
|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 |
| 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 |
|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 |
|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|
|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 |
|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. |
| 1.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|

-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금고
- 2.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 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 지상태에 있는 금고
- 3.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 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 이 어려운 금고
- ② 주무부장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향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준비금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금 고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부 실금고나 제2항의 부실우려금 고(이하 "부실금고등"이라 한 다) 및 부실금고등의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 ·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

- 1. 금고에 대한 주의・경고 및

 임직원에 대한 주의・경고・

 견책 또는 감봉
- 2. 출자금의 감액, 자기자본의 증대,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사무소·조직의 축소
- 3.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의한 수신(受信)의 제한
- 4.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(選任)
- 5.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(이하 "업무정지"라 한 다)
- 6. 합병
- 7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(이하 "사업양도"라 한 다)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(이하 "계약이전"이라 한다)
- 8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
 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
 서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
 정되는 조치

- ④ 주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(이하 "적기시정조치" 라 한다)를 하기 위하여 필요 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 여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금고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크게 미치 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 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1. 업무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 령
- 2.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<u>령</u>
- 3.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 령
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준하는 조치
-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금고가 단기간에 그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

할 수 있다.

-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제3 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금고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 하거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① 주무부장관은 부실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 실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,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- 1.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된 경우
- 2.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

 하여 제3항에 따른 명령이

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

 경우
- 3.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

제80조의2(계약이전의 결정) ①
주무부장관은 제80조제1항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
금고(이하 "부실금고"라 한다)
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
어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
전(이하 "계약이전"이라 한다)
결정을 할 수 있다.

② ~ ⑧ (생 략)

제80조의3(계약이전 결정의 효력) ①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 고의 권리・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.

② <u>제80조의2제1항</u>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의 요지 및

|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|
|-----------------------|
| 상환이 어렵게 되어 회원 등 |
| 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 |
| 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 |
| <u>는 경우</u> |
| 제80조의3(계약이전의 결정) ① |
| <u>부실금고에</u> |
| |
| <u>계약이전</u> |
| |
| |
| |
| |
| ② ~ ⑧ (현행과 같음) |
| 제80조의4(계약이전 결정의 효 |
| 력) ① <u>제80조의3제1항</u> |
| |
| |
| |
| |
| |
| ② 제80조의3제1항 |
| |
| |
| |

계약이전의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
- ③·④ (생 략)
- ⑤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재산의 이전에 등기·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취득한다.
- ⑥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제 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 을 한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로 하여금 계약이전 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·관리 하도록 하고 채권자등의 열람 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관·관리 및 열람 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주무부장관이 이를 정 한다.

제80조의4(관리인의 자격 및 권 전한 등) ① 해당 금고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80 조의2제6항에 따른 관리인(이

| ③·④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-----------|
| ⑤ <u>제80조의3제1항</u> |
| |
| |
| |
| |
| ⑥제80조의3제1 |
| <u></u> 항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제80조의5(관리인의 자격 및 권 |
| 한 등) ① |
| <u>제</u> 8(|
| 조의3제6항 |

하 이 조에서 "관리인"이라 한 다)으로 선임될 수 없다.

②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자산·부채 등을 관리·처분할 권한이 있다. 이 경우 관리인은 제80조의2제7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금고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대항할수 없다.

③ ~ ⑤ (생 략)

제80조의5(파산신청 등)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부실금고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있다.

② (생략)

제83조(청문 등) 주무부장관 또 는 회장이 제74조의2제1항제1 호, 제74조의3제1항제3호, 제79 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 의2제1항제1호·제74조의3제1

| ② |
|--|
| |
| <u>제80조의3제7항</u> |
| |
|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80조의6(파산신청 등) ① |
| <u>제80조의3제1항</u> |
| |
| |
| · ② (현행과 같음) 제83조(청문 등) |
| |
| |

항제3호, 제79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라 업무정지, 관계 임원 의 해임 · 직무정지를 명하거 나,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 장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 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

제85조(벌칙) ① ~ ④ (생 략) 저

⑤ 제2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| 제79조의5제1항제1호,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80조의2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세85조(벌칙) ① ~ ④ (현행과 |
| 같음) |
| ⑤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|
| <u>해당하는</u> |
| |
| ·. |
| 1. 제2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 |
| 고나 중앙회의 명칭 또는 이 |
|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|

| <u><신 설></u> | 2.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경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 |
| | 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|
| | 임원, 관리인 또는 청산인 |
| ⑥ (생 략) | ⑥ (현행과 같음) |